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노동법

발달장애인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알기 쉬운 글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책의 「근로기준법」은 2019년 1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인사글

최근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장애인 중 발달 장애인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뉴스에서 사업주가 발달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접합니다.

이런 사회문제를 만날 때 마다 발달장애인이 근로자로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주체는 사업주이지만 근로자인 당사자가 노동법 등 일과 관련된 법률적 기본 지식을 모르면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눈높이를 고려한 의사소통 도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노동법」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고용환경에서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이야기를 담았고 여기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손길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읽고 활용해서 사회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힘찬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2018년 03월 23일

이사장 조 종 란

소중한 작업에 직접 참여해 도움을 준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쉬운 글 감수

서울과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훈련생,

나사렛대학교 재학생들

그림

제9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2016)

회화직종 국가대표선수 이용우

이 책의 순서

이 책을 읽을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낱말 10

1. 일을 알아보고 있어요 17
   - 01. 일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알아야 합니다 18
   - 02. 근로자와 사용자는 누구일까요? 24
   - 03.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할까요? 32
   - 04. 하고 싶은 일을 정합니다 40

2. 일을 시작해요 49
   - 01. 일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0
   - 02. 일하기 전에 회사와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58
   - 03.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66

3. 일을 다니고 있어요 89
   - 01. 일은 몇 시간 동안 해야 할까요? (근무시간) 90
   - 02. 언제 쉴까요? (휴게, 휴일, 휴가) 100
   - 03. 회사에서 돈을 받았어요 111
   - 04. 임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금체불) 140
   - 05.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8
   - 06.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6

4. 일을 그만두었어요 195
   - 01.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당해고) 196
   - 02. 다른 일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사, 이직) 206
   - 03.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4

5.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는데 일을 할 수 있나요? 225
   - 01. 일하려면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226
   - 02. 아무 일이나 할 수 없습니다 231

부록 [도움을 주는 기관] 239

안내서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55

이 책을 읽을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낱말

▼

이 책에서 자주 나오는 낱말이 어떤 뜻인지 알려줍니다.

낱말의 뜻을 알면 책을 읽기 쉬워집니다.

ㄱ

근로	◦ 두뇌나 몸을 쓰거나 움직여서 일하는 것
근로자	◦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
근로계약	◦ 회사의 일을 하고 일한 만큼 돈을 받기로 약속하는 것
근로조건	◦ 회사와 근로자가 일하는데 필요한 임금, 근로시간, 작업환경, 휴가 등의 조건을 말함
급여	◦ 회사에서 일한만큼 받는 돈
공휴일	◦ 달력에 빨간색으로 색칠한 날짜
기간제근로자	◦ 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 비슷한 말로는 임시직, 계약직, 단기 근로자 등으로 표현

ㄷ

단시간근로자	◦ 동료들보다 짧게 일하는 사람

ㅂ

법정 휴일	◦ 법에서 쉬기로 정한 날 ◦ 5월 1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

ㅁ

무기계약직 근로자	◦ 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

ㅅ

사용자	◦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는 사람 ◦ 사장님, 이사님, 부장님 등을 말함
사업주	◦ 개인회사 사장님, 회사(법인)
사업장	◦ 일하는 장소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수습 기간	◦ 정식으로 일하기 전에 일을 배우는 시간
상여금	◦ 월급과는 별도로 일한 성과나 노력에 따라 직원에게 주는 돈 ◦ 비슷한 말로 보너스라고 표현
수당	◦ 정해진 기본급 외에 따로 주는 돈 ◦ 가족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시급	◦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성희롱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상사 또는 동료근로자가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수치심을 주는 것

ㅇ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하는 것
연장근로	◦ 하루 8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 ◦ 일주일에 40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
연차휴가	◦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일한 사람에게 주는 휴가
유급휴가	◦ 돈을 받으며 쉬는 휴가
임금	◦ 근로자가 일을 하고 받는 돈 ◦ 급여, 일급, 시급 등을 말함
연봉	◦ 일 년 동안 받는 모든 돈
월급	◦ 일한 만큼 매달 받는 돈
일급	◦ 하루 일하고 받는 돈

ㅈ

주휴일	◦ 일주일 중 일하기로 약속한 날을 모두 일하면 하루 쉬는 것

ㅊ

최저임금	◦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임금
출장	◦ 잠시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가는 것

ㅌ

통상근로자	◦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자
퇴직	◦ 일을 그만두는 것
퇴직금	◦ 1년 이상 일을 하다 그만둔 사람에게 회사가 주는 돈

ㅍ

폭행	◦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동

ㅎ

해고	◦ 약속을 어기고 일하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
휴가	◦ 일을 해야 되는 날이지만,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 쉬는 날
휴게	◦ 일을 하는 도중 쉬는 시간
휴업	◦ 회사에 문제가 생겨 출근할 수 없는 날
휴일	◦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쉬는 날)
휴일근로	◦ 쉬는 날에 일하는 것

– 1 –

일을 알아보고 있어요

▼

일하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법을 알면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01. 일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알아야 합니다

준서씨는 고등학교에서 바리스타가 하는 일을 배웠습니다. 바리스타는 커피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준서씨는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싶었습니다.

준서씨는 이력서를 가지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찾아갔습니다.

공단 담당 선생님을 만나 행복카페를 소개받았습니다.

오늘은 준서씨가 행복카페에서 면접을 보는 날.

카페 사장님이 준서씨에게 임금, 근무시간, 휴가에 관해 설명을 해줬습니다. 준서씨는 사장님이 하는 말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준서씨가 직장인이 되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국가는 준서씨처럼 일하는 사람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근무시간, 휴일 등의 규칙이 적혀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사람을 보호해줍니다. 일하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을 모르면 억울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합니다.

사장님이 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 없이도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일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일하게 되면 이러한 권리가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은 일하는 사람을 보호합니다. 노동법은 일할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 공평하게 대접을 받는다. (균등한 처우)
- 존중받는다. (폭언 및 폭행금지)
- 안전하게 일한다.
- 업무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의 내용 또는 일하는 장소에 대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연차, 병가 등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02. 근로자와 사용자는 누구일까요?

나는 왜 돈이 필요할까요?

- ✓ 식비
- ✓ 휴대폰 요금
- ✓ 영화 보는 비용
- ✓ 교통비

밥을 사 먹거나 버스를 탈 때 필요한 돈을 생활비라고 합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기로 약속합니다. 일하고 돈을 받습니다. 일을 하고 받는 돈을 임금이라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일까요?



여기에서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 가정주부

② 자기 땅에서 농사짓는 농부

③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④ 회사 사장

답: 3번

1. 가정주부: 가정주부는 누군가에게 고용된 것이 아닙니다. 임금을 받지도 않으므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2. 농부: 농부는 자기 땅에서 스스로 농산물을 수확하고 판매해서 돈을 벌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3.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공장 사장에게 고용되어 일합니다. 그 대가로 임금을 받으므로 근로자입니다.
4. 사장: 사장은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므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내가 할 일을 사장님이 정해 주었다.
- 회사의 정해진 규칙을 나도 적용받는다.
- 일할 때 사장님이나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회사에서 정해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서만 일한다.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다.
-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다.



우리는 보통 직장인이나 회사원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들 모두를 근로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용자는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① 회사 사장

② 사업경영담당자(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③ 인사담당자

④ 근로자

답: 4번

인사담당자는 근로자이지만,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이므로 사용자도 됩니다.

03.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1) 성실하게 일하기

근로자는 회사와 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① 안전규칙(안전)

- 작업 복장 갖추기
- 위험 구역에 출입하지 않기
- 기계 함부로 만지지 않기
- 위험물 조심하기



② 작업 태도(복무)

- 출퇴근 시간 지키기
- 회사에 못 나갈 때 회사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기
- 일을 한 뒤에 청소 및 정리 정돈하기
- 작업시간에 이유 없이 돌아다니지 않기



2) 정직하게 일하기

근로자는 정직하게 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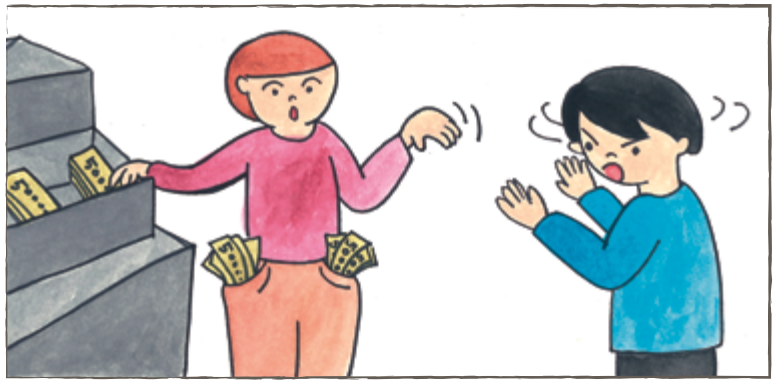
회사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회사의 돈이나 물건을 몰래 가져가도 안 됩니다.

- 회사의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기
- 회사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지 않기
- 함께 일하는 동료가 회사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것을 같이 하자고 할 때 싫다고 하기







3) 회사 비밀을 지키면서 일하기

■ 회사의 다른 근로자나 사업주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기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으면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04. 하고 싶은 일을 정합니다

1) 취업 정보 수집하기

-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채용 정보 홈페이지(www.worktogether.or.kr) 에서 채용정보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알림) 찾아보기
- 채용정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메모하기

* 자세한 내용은 도움을 주는 기관 242쪽 보기



채용에 대한 정보를 보는 방법입니다.



· 회사명: 회사 이름을 확인합니다.

· 업종: 회사가 무엇을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근로자수: 근로자가 많을수록 큰 회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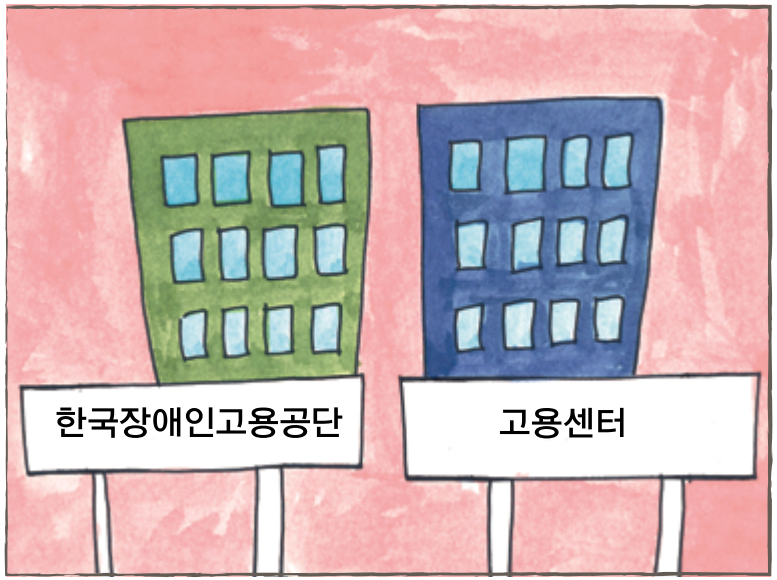
- 모집직종: 직업의 이름
- 직무내용: 회사에서 하게 될 일
- 고용형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 모집인원: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의 수
- 임금조건: 일을 하면 받게 될 돈

  예) 시급, 월급

2) 취업알선기관 방문하기

- 일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사는 곳에서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고용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가면 구직상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이 일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일자리를 찾고 싶을 때 242쪽 보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 1.

○○○ 는 돈을 벌기 위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_____

문제 2.

○○○ 는 회사에서 일한 대가로 임금을 주는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_____

문제 3.

○○ 은 일정한 시간 일하기로 사업주와 약속하고 일의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무엇일까요?

_____

문제 4.

보기 중에 작업태도가 바른 것은? _____

① 늦잠을 자서 회사에 연락하지 않고 쉬었다.

② 일을 한 뒤에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퇴근했다.

③ 기계를 함부로 만지지 않았고 작업복장을 갖춰서 입었다.

④ 위험구역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들어가 봤다.

문제의 답

문제 1.

답: 근로자

* 설명은 24, 28쪽을 보세요.

문제 2.

답: 사용자

*설명은 30쪽을 보세요.

문제 3.

답: 임금

*설명은 24쪽을 보세요.

문제 4.

답: 3번

설명은 32,34쪽을 보세요.

– 2 –

일을 시작해요

▼

일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와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알고

작성 할 수 있어야 합니다.

01. 일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버스 운전기사, 대형마트 점원, 사무직원, 편의점 점원, 은행원, 간호사 등이 있습니다.

직업은 다르지만 모두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직업의 종류가 다양하듯이 일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통상근로자

철수씨는 세탁공장에 다닙니다. 철수씨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합니다. 다른 직원들과 같은 시간에 일을 시작하고 같은 시간에 일을 마칩니다.

철수씨처럼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통상근로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통상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영희씨는 편의점에서 근무합니다.

영희씨는 9시에 출근해서 4시간만 일하고 1시에 퇴근합니다. 영희씨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같이 일하는 근로자보다 일주일 동안 근무시간이 짧은 사람을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시간제근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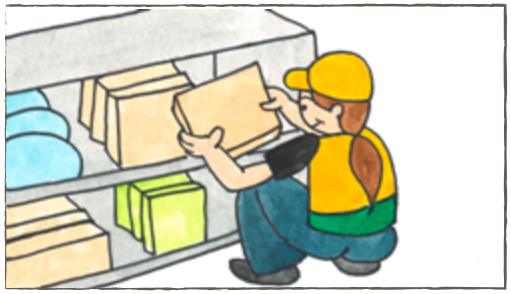
오전 9:00
출근



오전 10:00
청소



오후 12:00
물건정리



오후 1:00
퇴근



기간제 근로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언제까지 일하기로 정한 근로자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일을 그만둡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라고도 하며, 임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

일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정규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02. 일하기 전에 회사와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준서씨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 인사담당자를 만났습니다. 회사와 약속해야 할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준서씨는 먼저 언제까지(근로기간) 일을 할지 인사담당자와 함께 정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얼마를 받을지(임금) 정했습니다. 또 하루에 몇 시간(근로시간) 일할지도 정했습니다.

준서씨와 인사담당자는 정한 내용을 약속(근로계약) 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이란?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어떤 일을 하기로 약속하고 사업주는 그 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해 종이에 적는 것을 말하고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씁니다. 똑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 2부를 만들고 하나는 근로자가 하나는 사업주가 가집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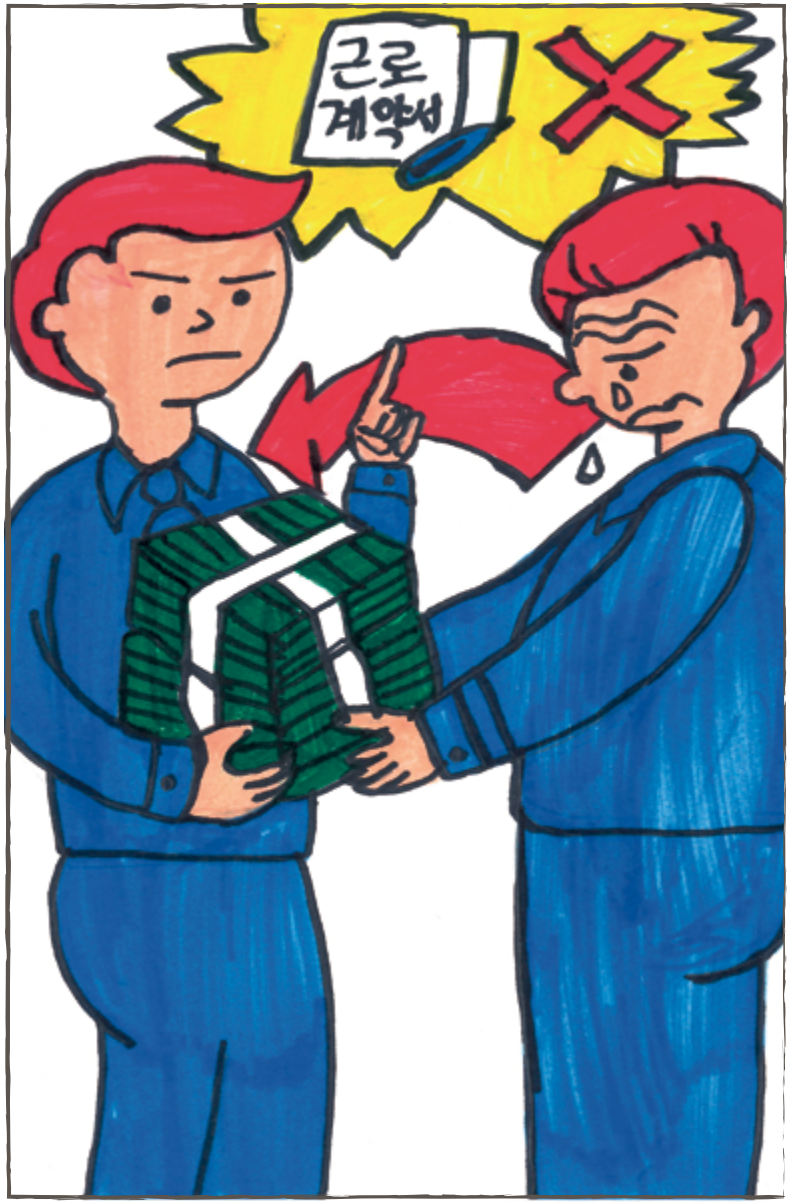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

근로계약은 종이에 써야 합니다. 종이로 된 계약서가 없다면 누군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전자문서로 된 전자근로 계약서도 인정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이런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 다음 근무자를 구할 때까지 그만둘 수 없음
- 1개월 이내 그만두면 임금 없음
- 하루 결근하면 하루 임금의 3배를 회사에 물어주기
- 지각하면 회사에 벌금 내기

잘못된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어도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중 법을 지키지 않은 내용은 무효가 되며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03.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근로 계약 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잘못된 내용이 없는지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친 다음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작성된 내용이 맞는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 계약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임금, 근로시간, 휴식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78쪽 고용노동부에서 나누어주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쉽게 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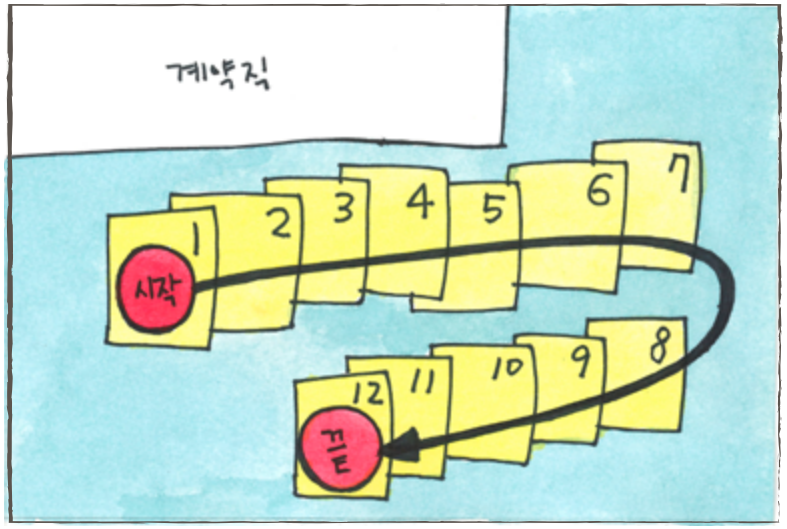


일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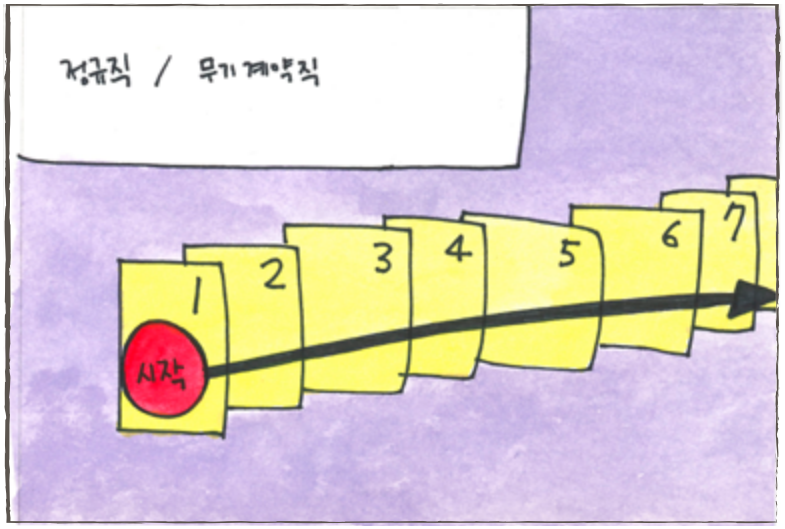
1) 근로 계약 기간

일이 시작되는 날과 끝나는 날

- 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직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거나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2) 근무 장소

실제 일하는 장소



3) 업무 내용

회사에서 하게 되는 일



4) 근로시간

일해야 하는 시간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은 법으로 정한 기준입니다. 이보다 짧게 일할 수도 있습니다.



5) 휴일

휴일은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을 말합니다.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곳)가 쉬는 날로 법정 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법정 휴일에 포함됩니다).

※ 더 알고 싶을 때는 97쪽과 108쪽 보기



공휴일이 휴일인지 회사에 물어봐야 합니다.



6) 임금

일한 대가로 회사에서 주는 돈



불리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 확인하기
-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 확인하기
- 휴일은 언제인지 확인하기
- 시간 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기
- 연장수당은 주는지 확인하기
- 임금 주는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하기
- 나에게 직접 주는지 확인하기
- 휴일 근무를 의무적으로 하는지 확인하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5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연소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로 구분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____년 ___월 ___일부터
   ____년 ___월 ___일까지

2. 근무장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___시 ___분부터 ___시 ___분까지
   (휴게시간 : ___시 ___분~ ___시 ___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___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___요일

6. 임금
   - 월(일, 시간)급 : _____원
   - 상여금 : 있음 ( ) _____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_____원, _____원
     . _____원, _____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일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주소 :
대표자 : (서명)

(근로자) 주소 :
연락처 :
성명 : (서명)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이 정함이 있는 경우)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_____와 근로자 _____는
다음과 같이 일할 것을 약속합니다.

1. _____년 ___월 ___일 부터 일을 시작하며,
_____년 ___월 ___일 까지 일하기로 합니다.

2. 일하는 장소 :

3. 일하는 내용 :

4. 일하는 시간 : ___시 ___분부터 ___시 ___분까지
(중간에 쉬는 시간 : ___시 ___분부터 ___시 ___분까지)

5. 매주 ___일 일하고, 매주 ___요일은 쉽니다.

6. 임금

■ 1시간에 _____원

■ 한 달에 _____원

■ 상여금(월급 이외에 추가로 주는 돈) :
있음( ) _____원, 없음( )

■ 급여 이외의 수당 : 있음( ), 없음( )
_____원, _____원
_____원, _____원

■ 임금은 매월 ___일에 지급하고, 월급날이 휴일이면 전날 지급

■ 월급은 나에게 직접 준다( )

■ 월급은 내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넣어준다( )

7.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줍니다.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복사하여 근로자(나)에게 준다.

10. 기타 : 이 계약에서 근로자(나)와 사업주가 약속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을 따르기로 한다.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 이름 : (전화 :)

주소 :

대표자 : (서명)

(근로자) 우리집 주소 :

연락처 :

성명 : (서명)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 1.

같은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시간을 근무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근로자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_____

문제 2.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보다 근무시간이 짧은 근로자는 무엇인가요?

_____

문제 3.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_____

① 정규직 근로자

② 단기근로자

③ 비정규직 근로자

④ 아르바이트

문제 4.

근로계약을 잘 한 사람은? _____

① 승기 : 사장님이 한 달 이내에 그만두면 임금이 없다고 했어요.

② 민호 : 결근하면 회사에 피해를 주니 돈을 물어내라고 했어요.

③ 태연 : 사장님과 근로계약을 하고 저랑 사장님이랑 각각 1부씩 나눠 가졌어요.

④ 윤아 : 부장님이 저에게 지각하면 벌금을 내라고 했어요.

문제 5.

근로계약은 누구와 맺어야 하나요?

_____

문제의 답

문제 1.
답: 통상근로자
* 설명은 52쪽을 보세요.

문제 2.
답: 단시간근로자
*설명은 54쪽을 보세요.

문제 3.
답: ① 정규직근로자
*설명은 56쪽을 보세요.

문제 4.
답: ③
*설명은 60,64쪽 보세요.

문제 5.
답: 나와 회사 (사장님 또는 인사담당자 등)과 맺어야 합니다.
*설명은 60쪽 보세요.

- 3 -

일을 다니고 있어요

▼

직장을 다니면서 알아야 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01. 일은 몇 시간 동안 해야 할까요? (근무시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로자와 사용자(회사) 사이에 몇 시간 일할지 근로시간을 정합니다.

이것을 소정 (일정하게 정하는 것)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일하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법으로 정한 일하는 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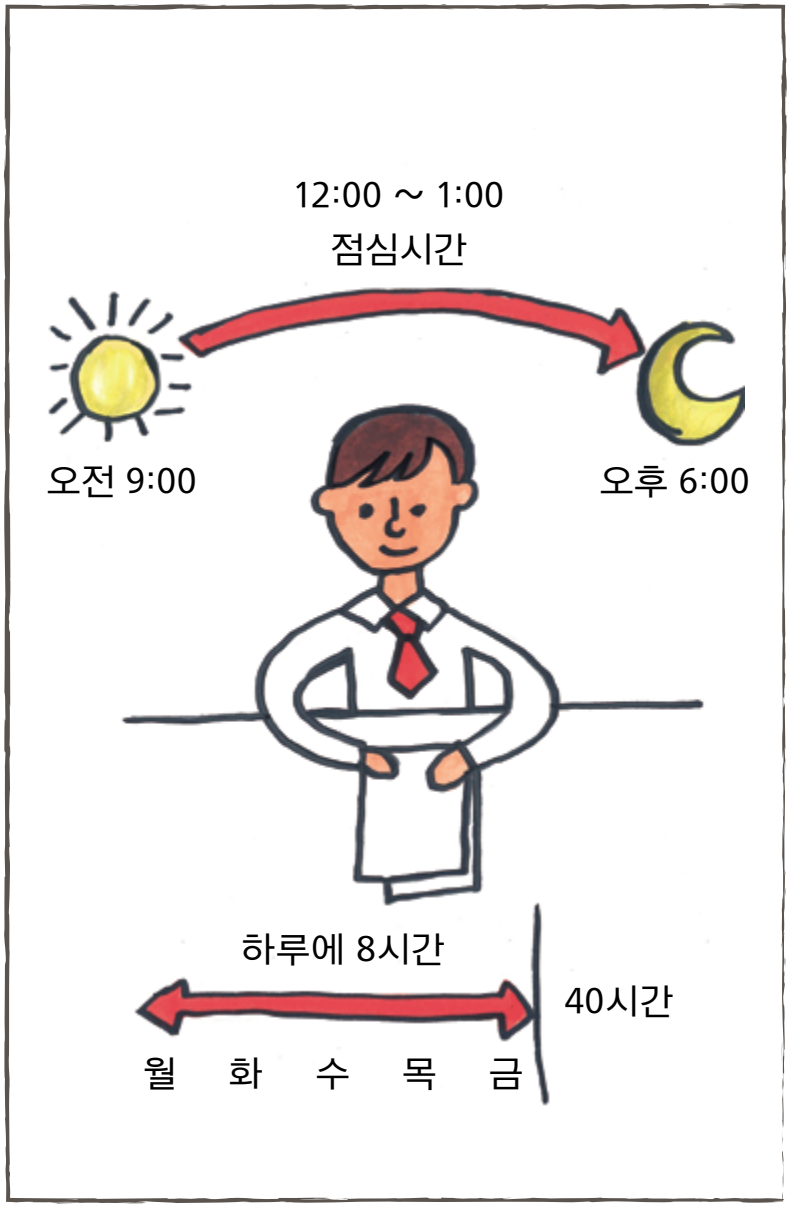
법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을 일합니다.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면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하게 됩니다.

⚠ 회사 사정에 따라서 토, 일요일에 근무하고 월요일~금요일 중에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장근로

- 통상근로자의 경우,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더하게 되면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약속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을 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일주일에 30시간 일하기로 사장님과 약속했다면 30시간 보다 더 일을 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 하루에 8시간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넘게 일을 하면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최대 12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는 것



휴일근로

회사가 쉬는 날이라고 약속한 휴일에 일하는 것

- 법에서 정한 휴일을 '법정 휴일'이라고 합니다. 유급주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 '약정 휴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정한 휴일입니다.
- 회사와 쉬기로 정한 날에 일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라고 합니다.
- 달력의 빨간 날이 회사가 쉬는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14시간을 일하기로 했어요.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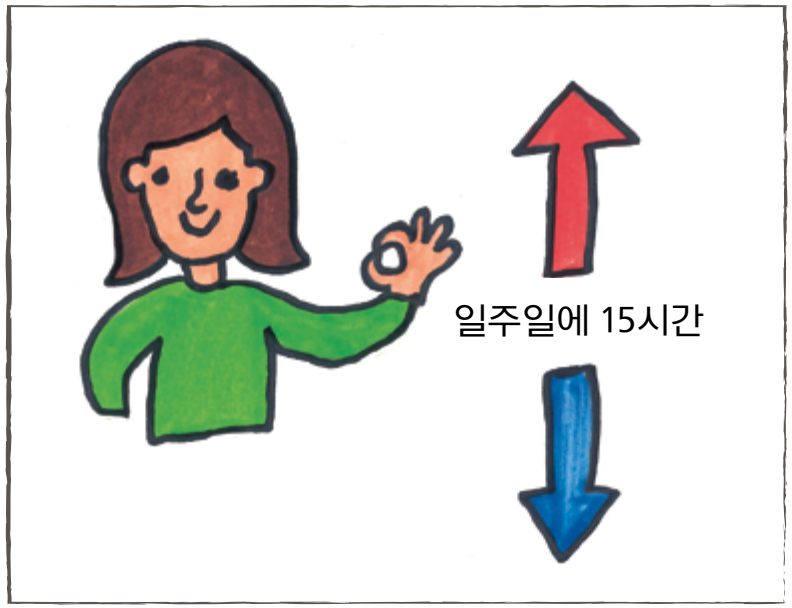
회사에서 장애인에게 힘든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해서 저는 하루에 2시간~3시간만 일을 해요. 일주일에 14시간만 일합니다. 좋은 직장인 것 같아요.

대답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되면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듭니다.(초단시간근로자)

혜택받을 수 없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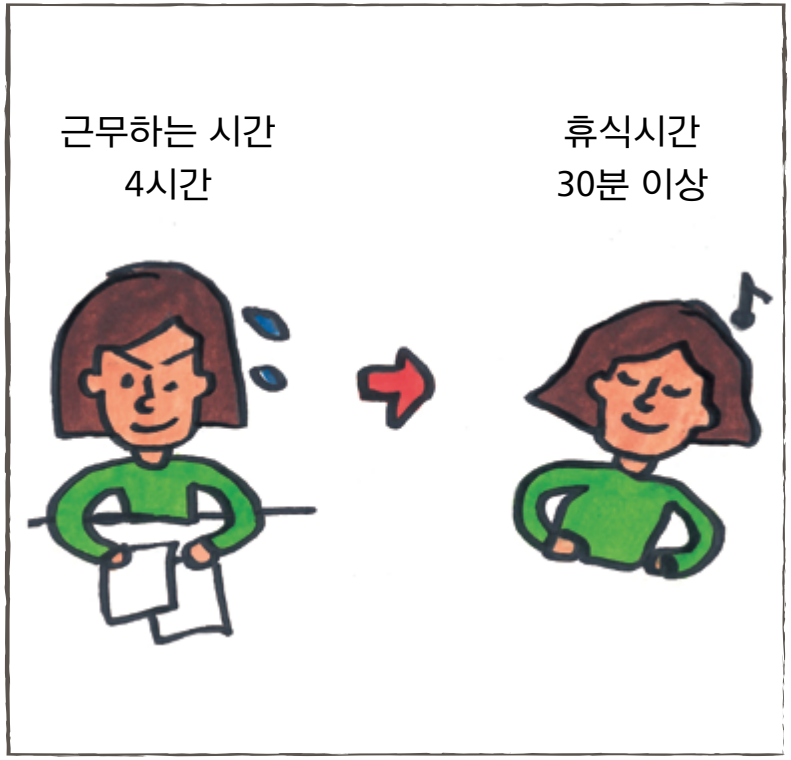
1. 연차휴가
2. 퇴직금
3. 유급 주휴일
4.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5. 기간제 근로자가 2년 넘게 일을 해도 무기계약 전환 안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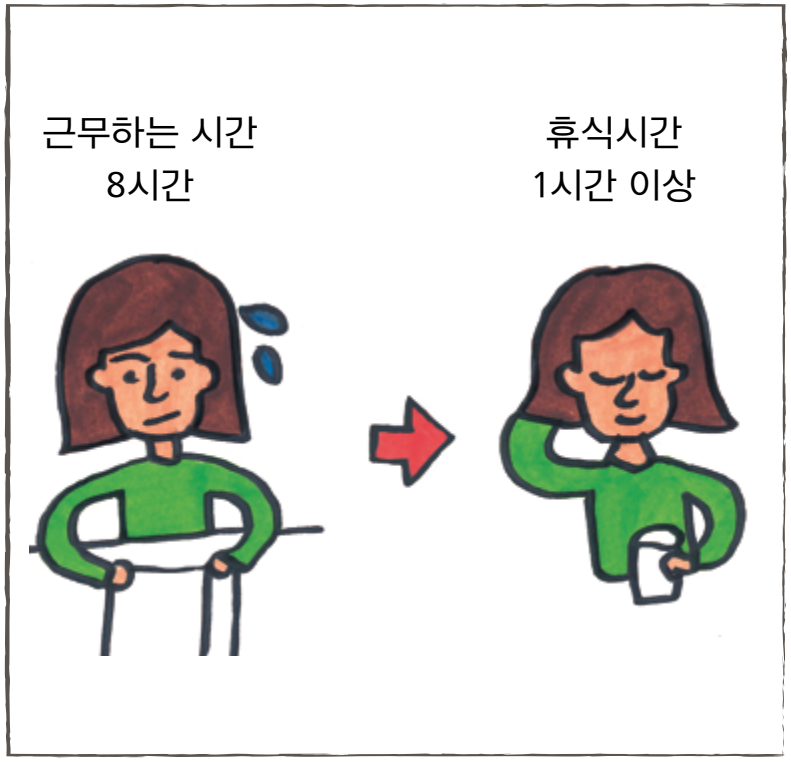


02. 언제 쉴까요?(휴게, 휴일, 휴가)

1) 휴게 - 쉬는 시간

근무하는 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을, 8시간 일을 하면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에 휴식시간으로 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일하는 시간에 포함됩니다.

- 작업 도구 준비, 작업지시, 회의, 조회 등 일하기 전 준비 시간도 일하는 시간입니다.
- 청소하는 시간, 물품 정리 시간 등 일이 끝난 후 정리하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입니다.
- 식당, 의류판매점, 병원 등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입니다.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도 일하는 시간입니다.



2) 주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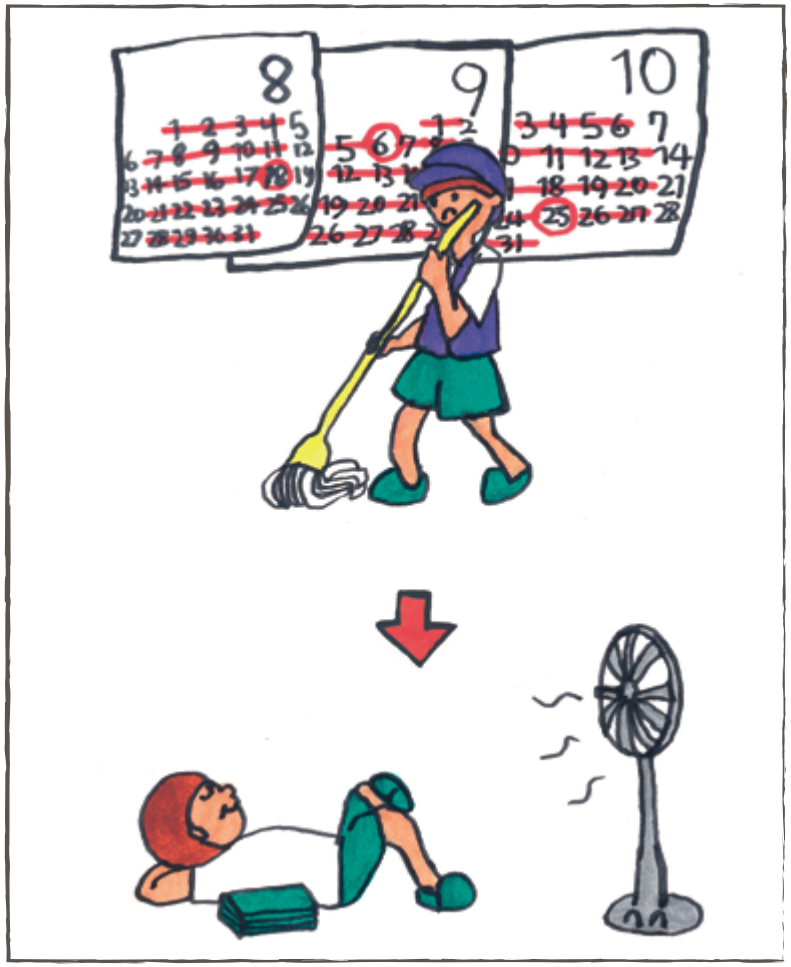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을 모두 일하면 하루 이상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일요일에 쉽니다. 회사마다 쉬는 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 한 달 동안 회사를 출근하면 하루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고 쉴 수 있습니다.



일한 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는 어떤지 알아봅시다.

- 1년에 80퍼센트 이상 회사에 빠지지 않고 나가 일을 하면 다음 해에 15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휴가일이 15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일주일에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이 없습니다.(초단시간근로자)



공휴일은 모두 쉬는 날인가요?

질문

달력에 빨간 표시가 되어있는 공휴일은 모두 쉬는 날인가요?



“ 내일은 달력에 빨간 표시가 되어있으니 쉬는 날이죠? ”

“ 우리 회사는 일하는 날이라네. ”



대답

공휴일에는 쉰다고 약속하지 않았으면 그날은 일하러 나가야 합니다. 일해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날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입사 전에 쉬는 날이 언제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법으로 정한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 1일) 입니다.

03. 회사에서 돈을 받았어요

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는 금품입니다.

1) 임금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 근로자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임금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나라에서 매년 정합니다.
-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법을 따라야 합니다.
- 근로자는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받으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다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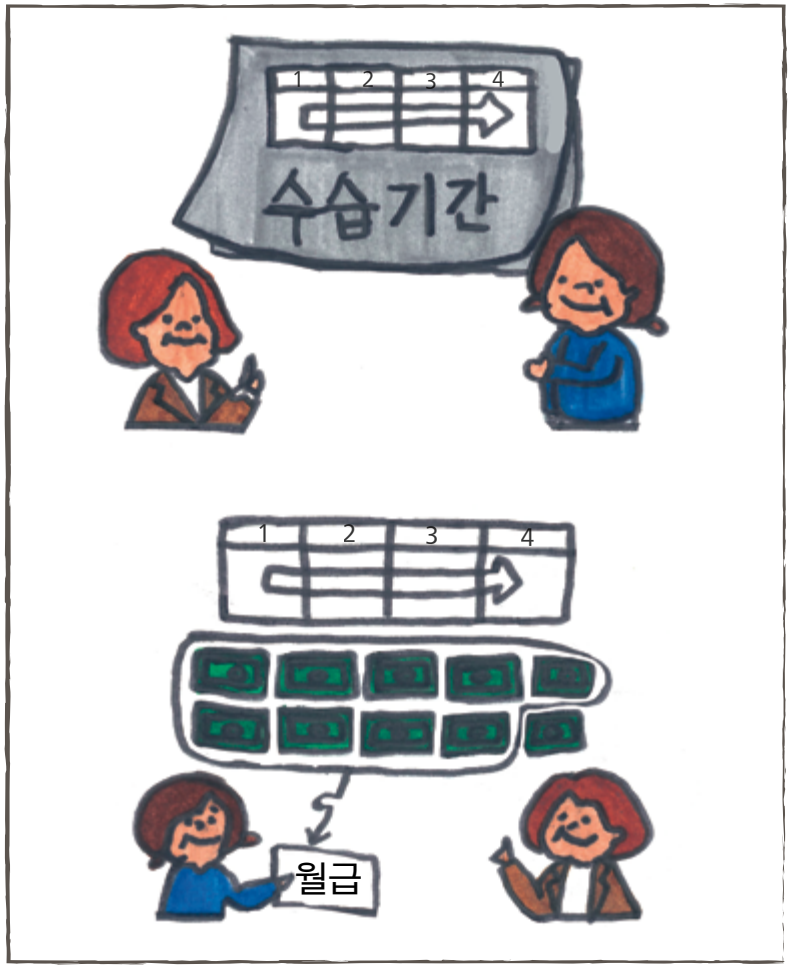
연도별 최저임금

기간	시급	일급	한달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18	7,530원	60,240원	1,573,770원
2019	8,350원	66,800원	1,745,150원

장애인 근로자가 동의서를 작성하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일을 배우는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10% 적은
최저임금을 적용 받습니다.



■ 1년 미만 계약직은 일을 배우는 기간이라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돈을 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www.minimumwage.go.kr)에서 내가 받는 돈이 최저임금보다 많은지 또는 적은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수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당은 기본급 외에 따로 주는 돈입니다.

수당은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을 더 했을 때 받는 돈입니다. 근로자에게 일을 더 하면 주는 수당은 회사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되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덜 시키도록 하기 위해 정해졌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자신의 줄어든 여가시간을 경제적으로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수당에는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모두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더 일을 하면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모두 나와 일을 하면 하루 이상 쉴 수 있습니다. 이날에는 일하지 않아도 돈을 줍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하루 동안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을 받을 때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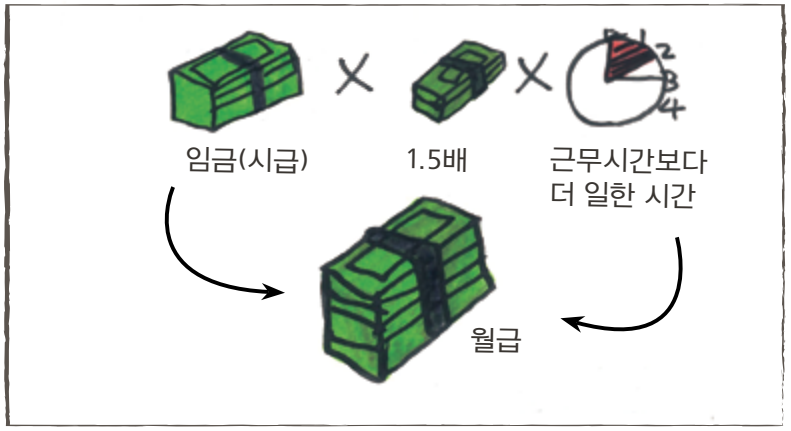
준서씨는 편의점에서 하루에 4시간 일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많이 와서 1시간을 더 일했습니다.



준서씨는 1시간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근무시간보다 더 일했을 때 받는 돈





- 회사에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보다 일을 더 하면 그만큼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를 하면 내가 받는 임금(시급)보다 1.5배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시급 (　　) × 1.5 × 연장근무 시간=

만약 1시간 임금(시급)이 8,350원이고,

한 시간 연장근무를 한 경우

8,350원 × 1시간 추가근무 × 1.5 = 12,525원

⚠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보다 더 일하면 전부 연장근무입니다.

야간근로수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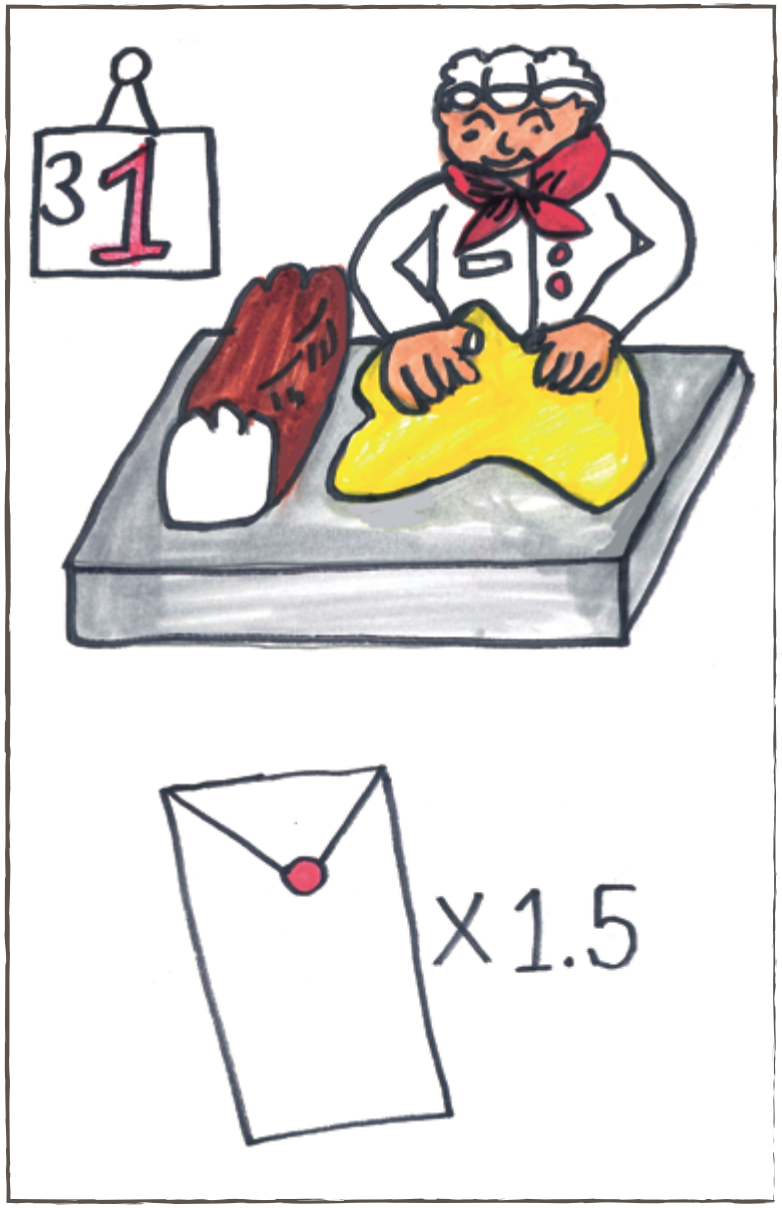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일해서 받는 돈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일하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는 시급보다 1.5배 더 받습니다.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 약정 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일하면 받는 돈입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더 받습니다.



3) 임금을 받을 때도 원칙이 있습니다.

- 현금인 돈으로 (또는 은행계좌로) 받아야합니다.
- 내 이름으로 내가 직접 받아야합니다. 은행에 입금 해 줄 때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임금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 매달 한 번 이상 월급날을 정해서 받아야 합니다.
- 근로계약 했을 때 받기로 한 월급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 대신에 상품권을 받았어요.

질문

임금 대신 상품권으로 가져가라고 하는데요.
임금을 물건이나 상품권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대답

안 됩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물건,
상품권, 주식 등으로 지급될 수 없습니다.
임금은 직접 현금으로 주기도 하며 통장에
입금해 주기도 합니다.



부모님(장애인시설 담당자 포함)이 임금을 저 대신 받아요.

질문

임금이 부모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모은 돈으로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

임금은 일하는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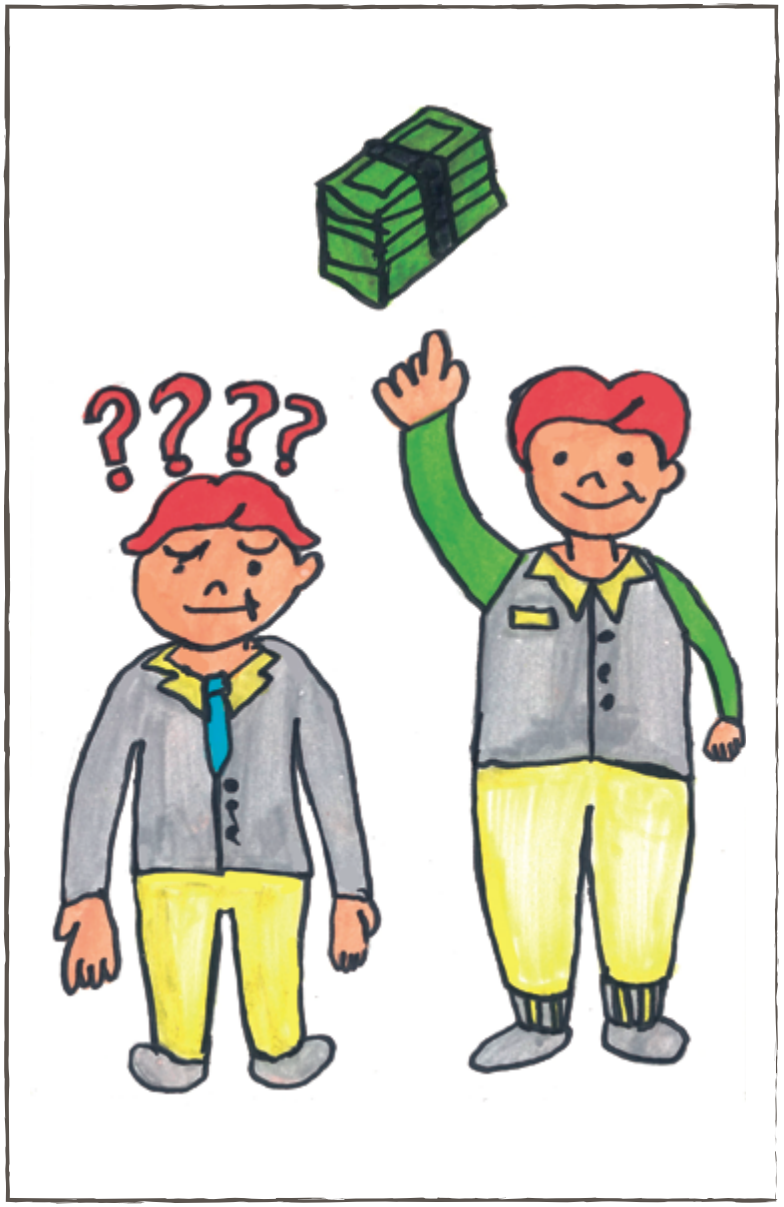
임금은 사장님이 주고 싶을 때 주는 건가요?

질문

근로계약서에는 월급날이 매월 15일로 되어 있는데요. 사장님이 그날 월급을 주지 않아요. 어떤 달에는 월급을 주지 않고 다음 달에 줄 때도 있어요.

대답

한 달을 넘겨서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은 법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월급을 다 안주는데요.

질문

월급을 130만 원 받기로 했는데, 120만 원만 주고 10만 원은 나중에 회사를 그만둘 때 준대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대답

안 됩니다.

임금은 전액을 줘야 합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임금의 일부를 빼서 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세금(근로소득세, 주민세)이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은 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근하면 임금을 제외할 수 있나요?

질문

저는 식당에서 3주 동안 일하다 2일을 빠졌습니다. 사장은 일을 안 나왔기 때문에 임금을 깎아서 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되는 건가요?

대답

네.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결근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회사는 임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월급을 받고 있어도 일을 하지 않은 시간을 빼고 월급을 줄 수도 있습니다.



⚠

결근하지 말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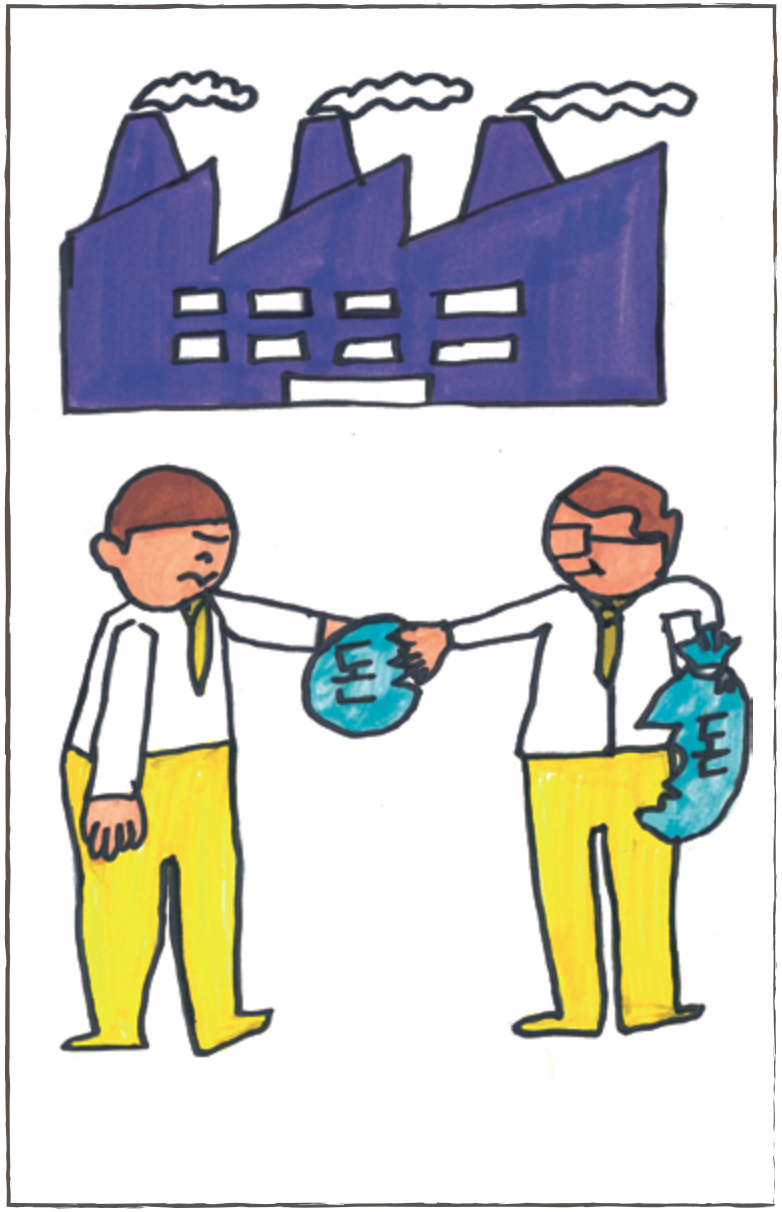
임금을 저축해 준다고 하는데요.

질문

제가 다니는 공장에는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저희 월급에서 얼마를 떼서 따로 저축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되나요?

대답

안 됩니다. 사장님이 저축금을 관리해 준다면서 월급에서 얼마씩 떼고 주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다른 사람이 강제로 저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04. 임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금체불)

- 임금을 적게 받거나 임금을 주기로 약속한 날에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아도 임금체불입니다.
-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을 체불한 회사와 대표자의 이름은 체불 정도에 따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임금을 주지 않아요.

질문

소파공장에서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13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임금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대답 ①

회사에 밀린 임금을 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만약 혼자 말하기 어려우면 부모님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대답 ②

임금을 달라는 편지를 쓰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대답 ③

회사에 편지를 보냈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합니다.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합니다.
- 사업장이 있는 노동지청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내용 접수

②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 사업주가 임금 체불 한 건지 사실 조사

사업주가 밀린임금 줬다. → 사건 종결

사업주가 밀린임금 안줬다. → 형사 처벌

※ 더 알고 싶을 때는 244쪽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찾아보기



05.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폭언, 폭행

신입사원이 된 민지씨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직장 상사에게 거친 말을 듣기(폭언)도 하고 장갑으로 머리를 맞기(폭행)도 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언하거나 폭행을 하면 안 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

일하다가 실수를 했거나 사고를 내 회사에 피해를 주면 회사는 징계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폭언, 폭행에 해당합니다.

- 나에게 물건을 자주 던진다.
- 나에게 욕이나 내 맘을 상하게 하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한다.
- 같이 일하는 동료가 때리거나 발로 찬다.
- 사장님이 일을 시킬 때 머리나 등을 때린다.



2) 직장 내 성희롱

- 회사 사람들이 나에게 성적인 말을 하거나 강제로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회사에서 일하기 힘들게 하겠다고 겁을 주며 강제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회사 사람들이 한 말과 행동으로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수치스럽다면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은 남자, 여자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성희롱 · 폭력은 나의 기분을

- 슬프게 합니다.
- 화나게 합니다.
- 걱정되게 합니다.
- 수치스럽고 안 좋은 기분이 들게 합니다.
-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 무섭고 두려워지게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이런 경우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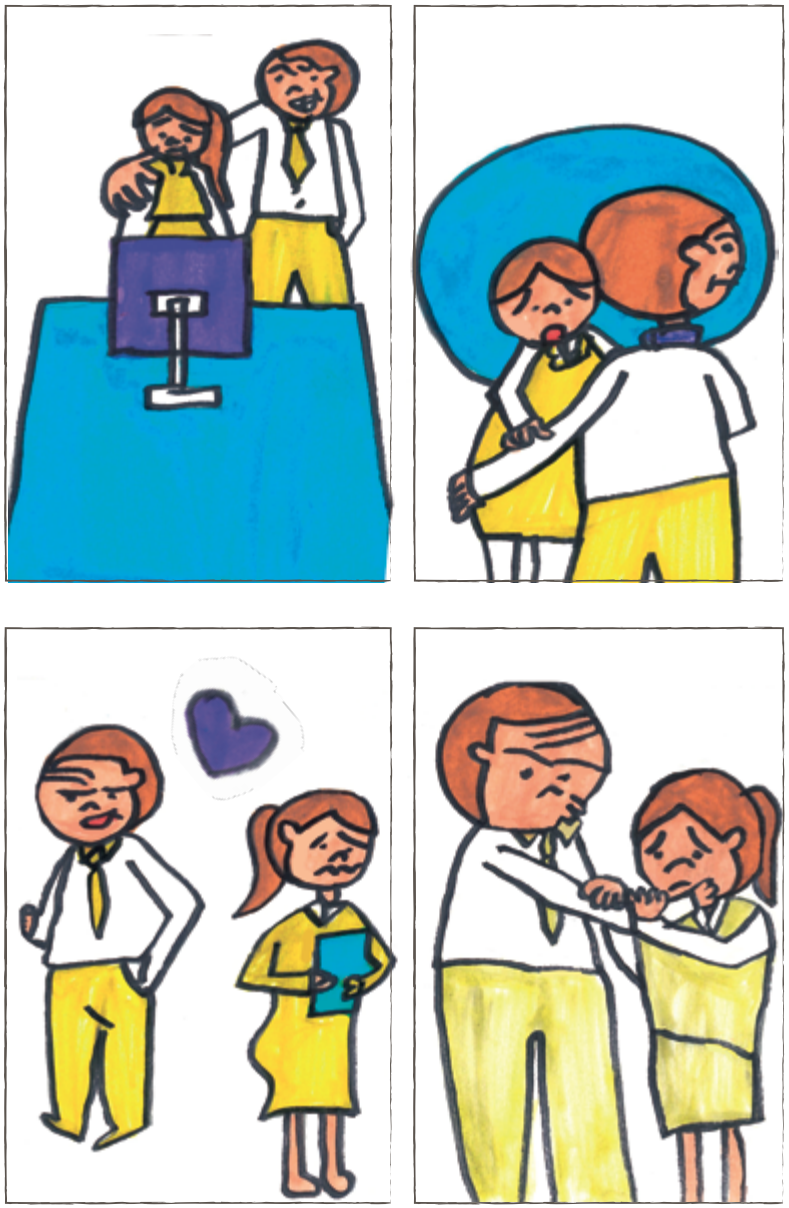
◆ **언어적 성희롱:**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말

- 회사 동료나 상사가 나에게 성적인 말을 하여 불쾌한 마음이 들었을 때
-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 **신체적 성희롱:** 입맞춤이나 포옹을 강제로 하거나 몸을 만지는 행동

- 나는 원하지 않는데 회사 동료나 상사가 나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할 때
- 나는 원하지 않는데 회사 동료나 상사가 자기 몸을 만지게 할 때 (안마 좀 해봐~)
- 내 앞에서 상대방이 자기 몸을 만지며 성적인 행동을 할 때
-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에게 입맞춤하려고 할 때
-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몸을 만지려고 할 때



◆ **시각적 성희롱:**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자기 몸을 보여주는 행동

- 회사 상사나 동료가 내게 야한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줄 때
- 회사 상사나 동료가 옷을 벗고 자기 몸을 보여줄 때
- 회사 동료나 상사가 돈이나 선물을 주면서 나에게 억지로 행동하게 하는 것



성희롱 · 폭력으로 힘들 때 해결방법

성희롱·폭력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에 알려야 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입니다.

‘하지마세요’ ‘싫어요’ 라고 확실하게 거부의사를 말하기

↓

날짜, 시간, 장소, 나에게 성적인 언어,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어두거나 녹음하기

↓

회사 내 고충처리기관에 알리기 (인사, 감사, 노동조합, 사업주 등)

↓ 회사에서 도와주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 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자세하게 알림)

※ 더 알고 싶을 때는 249쪽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찾아보기



06.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안전사고와 산업 재해

지희씨는 식당 조리실에서 일합니다. 조리실은 바닥이 미끄러워서 미끄러짐 방지 신발을 신어야 하고 뜨거운 국물을 옮길 때도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한 복장을 하지 않거나, 조심하지 않으면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주의로 인해 생기는 모든 사고를 안전사고라고 합니다.

안전사고를 포함해 산업현장에서 생기는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직장에서 다치지 않도록 합니다.
- 근로자가 일하다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근로자 또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주를 도와야 합니다.



2)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

자신과 다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 충분하게 잠을 자고 건강한 몸으로 일을 합니다.
- 작업환경에 적절한 복장과 보호구(안전모, 장갑, 마스크 등)를 착용합니다.
-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일을 합니다.
- 작업 도구를 작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담당자 외에는 위험표시 구역에 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일하다 다쳤을 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근로복지공단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1단계 : 가벼운 부상

다쳤을 경우 회사에 알리기

- 다친 상황에 대해 잘 기억하기 위해 메모나 녹음
- 다친 걸 직접 본 사람 찾아두기

메모 예시

① 날짜, 시간 : 2019년 10월 1일 10시
② 장소 : 회사 계단
③ 왜 다쳤는지 : 청소하다가 미끄러짐
④ 아픈 곳 : 다리

응급처치 후 계속 아프면 병원가기

진단서 받기







■ 2단계 : 많이 다쳤을 경우
(진단서에 4일 이상 요양이 나온 경우)

다쳤을 경우 회사에 알리기

- 다친 상황에 대해 잘 기억하기 위해 메모나 녹음
- 다친 걸 직접 본 사람 찾아두기

메모 예시
① 날짜, 시간 : 2019년 10월 1일 10시
② 장소 : 회사 계단
③ 왜 다쳤는지 : 청소하다가 미끄러짐
④ 아픈 곳 : 다리

응급처치 후 계속 아프면 병원가기
진단서 받기

-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산재 신청하기
-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신청

치료비와 월급의 일부를 보상받기

※ 더 알고 싶을 때는 251쪽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찾아보기



제 실수로 일하다 다쳤어요.

질문

제가 일을 배운지 얼마 안 돼서 실수로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대답

본인의 실수로 다친 것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질문

우리 회사는 너무 작아서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있어요. 회사에서 다칠까 봐 걱정돼요.

대답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1인 이상이 일하는 곳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식당에서 밥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어요.

질문

회사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식중독에 걸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식중독에 걸려 병원에 갔습니다.
이런 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대답

업무에 의한 질병으로 3일 이내 치료를 했다면
사업주가 직원에게 치료비를 줘야 합니다.

4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거나 집에서 쉬어야 한다면 회사 근처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 1.

서로 알맞은 것끼리 줄을 그어 짝지어 보세요.

① 법정근로시간 •	• 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는 것
② 연장근로 •	• 나. 법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정한 시간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③ 야간근로 •	• 다. 회사가 쉰다고 약속한 휴일에 일하는 것
④ 휴일근로 •	• 라. 내가 회사와 약속한 근무시간, 근무일보다 더 일을 하는 것

문제 2.

다음 중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_____

① 기쁨 : 저는 원래 하루에 4시간 일하는데, 오늘 일이 많아서 1시간 더 일했어요

② 새롬 : 저는 편의점에서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해요

③ 민준 : 저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집에서 쉬었어요

④ 원호 :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일하고 있어요

문제 3.

소정씨는 카페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총 4시간 일을 합니다. 쉬는 시간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요?

_____

문제 4.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약속한 날을 모두 일하면 하루 이상 쉴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출근	출근	출근	출근	출근	무급	휴일

_____

문제 5.

수지씨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워크포털사이트 에서 도서관 사서 보조 채용 공고를 보았습니다.

다음 중 잘못된 부분은 어디일까요? _____

〈도서관 사서 보조 모집〉

① 회사명: 서울시립도서관

② 직무 내용: 책 정리하기

③ 고용형태: 1년 계약직

④ 임금: 시급 4,500원

문제 6.

나는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다음 중 맞는 것은? _____

① 나는 돈 관리가 어려우니, 부모님이 나 대신 임금을 받는다.

② 사장님이 내 월급에서 10만 원씩 가져가서 나중에 퇴직금으로 되돌려 준다고 했다.

③ 나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돈으로 월급을 받는다.

④ 사장님이 매달 임금을 받지 말고, 편하게 두 달에 한 번씩 받으라고 했다.

문제 7.

사장님이 3달째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나는 대로 모두 적어보세요.

문제 8.

회사에서 선배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일할 거면 그만둬!”라며 내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 선배직원은 평소에도 저에게 야한 사진을 보여주며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나는 대로 모두 적어보세요.

문제 9.

준서씨는 8시간 근무하고 한 시간 더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준서씨의 시급은 8,350원을 받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시급의 1.5배입니다.
준서씨의 연장근무 수당을 계산해보세요.

문제 10.

2019년 최저임금 시급은 얼마일까요?

_____ 원

문제 11.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기관으로 가야 할까요? _____

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② 고용센터

③ 근로복지공단

④ 국민연금관리공단

문제 12.

성희롱이나 폭력으로 회사에 다니기 힘들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어느 기관으로 가야 할지 2곳을 찾아보세요. _____ , _____

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② 근로복지공단

③ 고용노동부

④ 국가인권위원회

⑤ 국민연금관리공단

문제의 답

문제 1.

① - 나.

*설명은 92쪽을 보세요.

② - 라.

*설명은 94쪽을 보세요.

③ - 가.

*설명은 96쪽을 보세요.

④ - 다.

*설명은 97쪽을 보세요.

문제 2.

답: ①

*설명은 연장근로수당 120쪽을 보세요.

문제 3.

답: 30분

*설명은 100쪽을 보세요.

문제 4.

답: 주휴일

*설명은 104쪽 보세요.

문제 5.

답: ④

*설명은 최저임금 시급 113쪽을 보세요.

문제의 답

문제 6.

답: ③

*설명은 임금지급원칙 126쪽을 보세요.

문제7.

예시) 회사에 밀린 임금 달라고 말하기, 임금을 달라는 편지를 쓰고 내용증명을 받기,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설명은 140쪽부터 임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시 읽어보세요.

문제 8.

예시) '하지 마세요' 싫어요라고 확실하게 거부의사를 말하기, 날짜, 시간, 장소 나에게 성적인 언어,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어두거나 녹음하기, 회사내 고충처리기관에 알리기,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하기

*설명은 164쪽 보세요.

문제의 답

문제 9.

답:

8,350원 × 1.5=12,525원

*설명은 122쪽 보세요.

문제 10.

답: 8,350원

*설명은 113쪽 보세요.

문제 11.

답: ③

*설명은 172쪽 보세요.

문제 12.

답: ③, ④

*설명은 164쪽 보세요.

- 4 -

일을 그만두었어요

▼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01.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당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만 두라고 할 경우 종이에 그만 두어야 하는 이유와 시기를 적어 알려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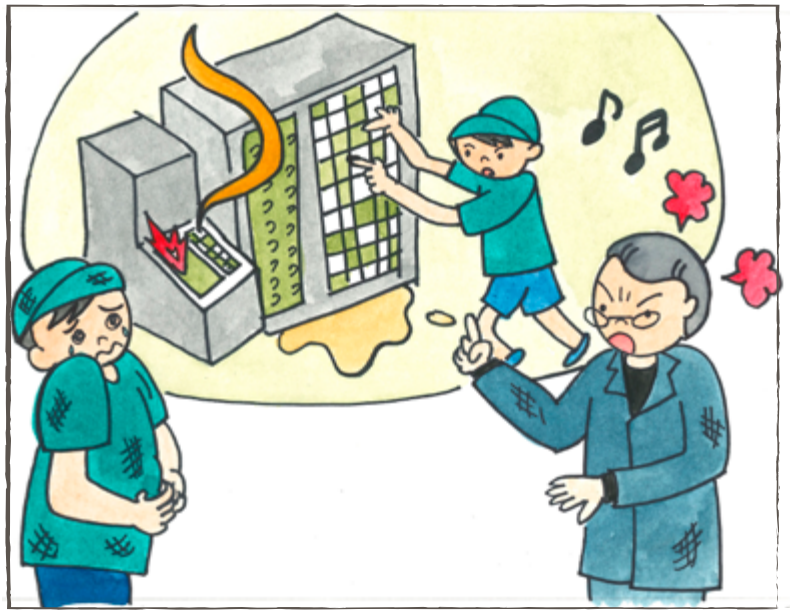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 함께 일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 해고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려울 경우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

단기·임시직 근로자는 해고한다고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인데 그만두래요.

질문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수습기간에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그만두라고 하는데 30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답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줘야 하지만 수습 근로자는 적용 되지 않아요.



해고한다고 미리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사람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기로 한 경우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기로 한 경우
- 수습 기간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사람



억울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그만두었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당한 근로자

3개월 이내 구제신청

사업장 주소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불복시 15일 이내 행정소송

행정소송

⚠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02. 다른 일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사, 이직)

준서씨는 바리스타로 카페에 취직했습니다.

준서씨는 바리스타를 하며 밝게 인사하기, 매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등을 배웠습니다.

요즘 준서씨는 바리스타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준서씨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카페를 그만 두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락도 없이 회사에 나가지 않거나 전화를 해서 내일부터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일을 그만둘 때는 최소 일주일 전에 미리 사장님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는 것에 대해 '사직의 자유'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사업주가 그만두지 못하게 하거나 강제로 계속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고자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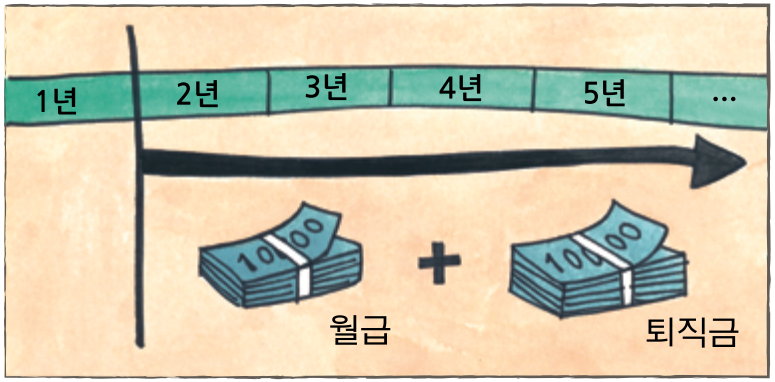
집에서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구직상담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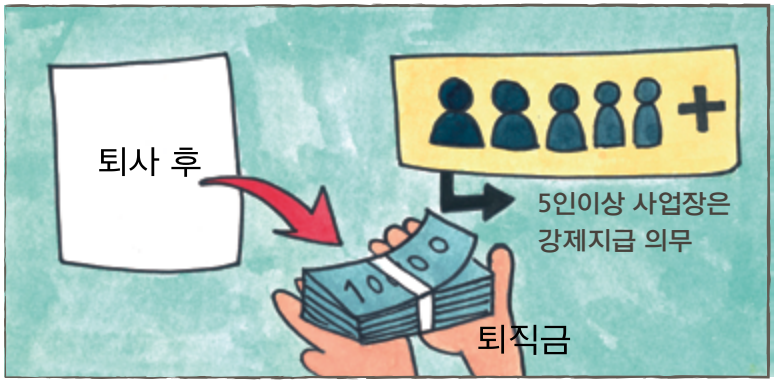
※ 더 알고 싶을 때는 242쪽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찾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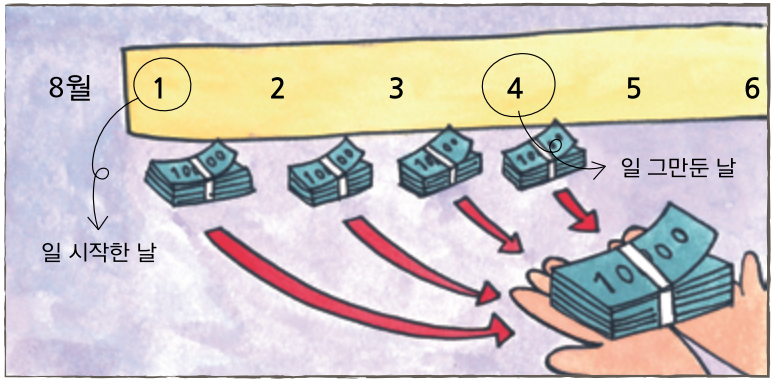


회사를 그만둘 때 당당하게 퇴직금 받기

- 1년 이상 계속 일을 한 경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평소 임금과 별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반드시 회사를 퇴사하고 지급되는 것입니다.
- 회사에 입사한 후 얼마 안 다니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는 일한 날짜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그만두면 퇴직금을 안 준대요.

질문

저는 ㅇㅇ식품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임금을 주지도 않고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만둔다고 말하니까 그만두면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대답

근로자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도 임금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이 잘못된 행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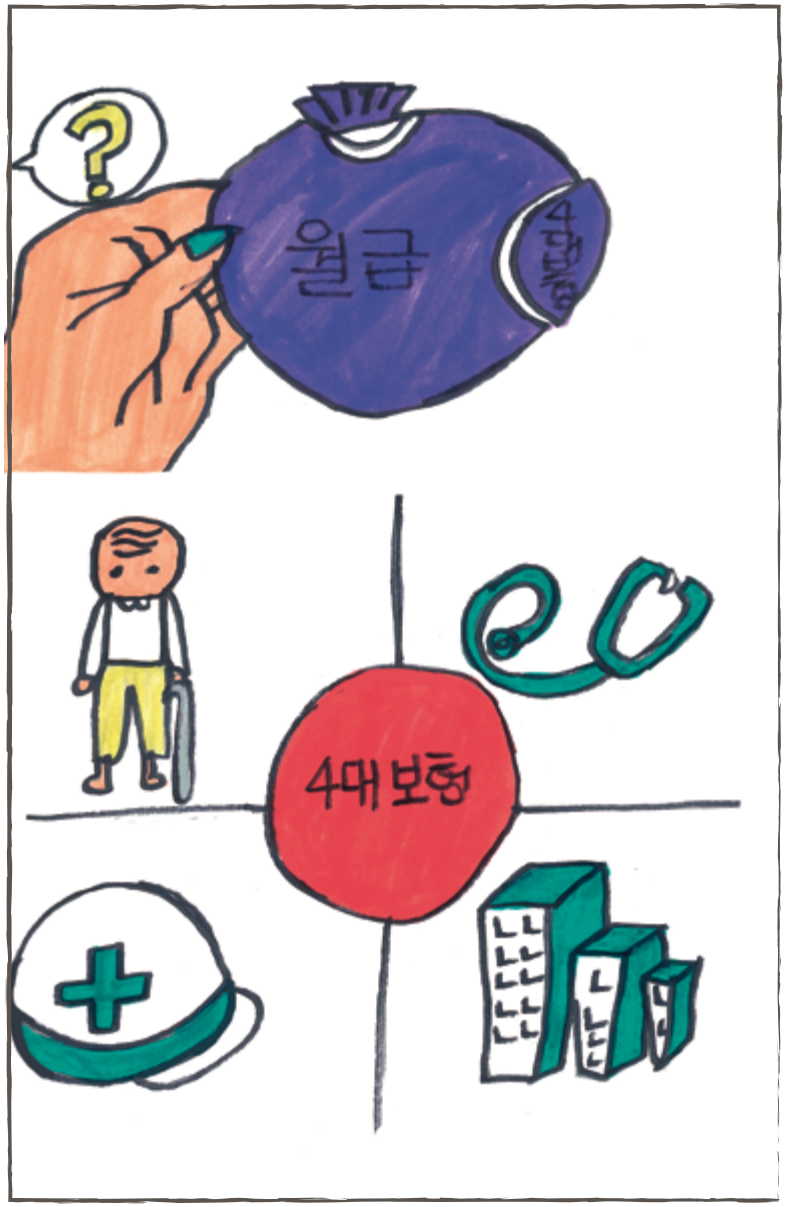
03.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서씨는 회사에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봤더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으로 월급이 빠져 나가 있었습니다.

준서씨는 왜 자기가 가입하지 않은 보험으로 월급이 빠져나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보험 제도입니다.

보험이란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돈을 모아놨다가 사고를 당하면 주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사장님이 병원비를 안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다쳤을 때 국가에서 치료비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장님이 가입하는 보험이며, 보험료도 사장님이 냅니다.
-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회사 근처의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더 알고 싶을 때는 251쪽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찾아보기



고용보험

- 직장을 잃었을 경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고용보험입니다.
-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다시 취업해야 하지만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실업 급여를 지급하여 다시 직장을 가질 때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다시 취업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구직활동이나 이직 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직업훈련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합니다.

※ 더 알고 싶을 때는 248쪽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찾아보기



국민건강보험

-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해서 회사에서 직장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국민이 은퇴한 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가입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 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해고면 ○, 부당한 해고면 ×로 표시하세요.

① 회사사정이 안 좋아서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을 해고했습니다. (　　)

② 1년 넘게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 라고 했습니다. (　　)

③ 저는 수습중입니다. 사장님이 30일 전에 미리 해고 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　　)

④ 해고 시 미리 30일 전에 알려주고 30일분 이상의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　　)

문제 2.

1년 이상 계속 일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면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_____

문제 3.

직장을 잃었을 경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보험은 무엇일까요?

_____

문제 4.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치료비와 입원비를 지급해 주는 보험은?

_____

문제의 답

문제 1.

① ○

* 설명은 198쪽을 보세요.

② ×

* 설명은 196쪽을 보세요.

③ ○

* 설명은 200, 202쪽을 보세요.

④ ○

* 설명은 198쪽을 보세요.

문제 2.

답: 퇴직금

*설명은 210쪽을 보세요.

문제 3.

답: 고용보험

*설명은 218쪽을 보세요.

문제 4.

답: 산업재해보상보험

*설명은 216 쪽 보세요.

- 5 -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는데 일을 할 수 있나요?

▼

만 18세가 되지 않은 근로자는 법으로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일하기 전에 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01. 일하려면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준서씨는 만으로 17살입니다. 준서씨는 다른 아이들 보다 먼저 사회에 나가려고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준서씨는 구인정보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몇 군데 전화하니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만 18세가 안 된 사람을 '연소자'라고 하여 법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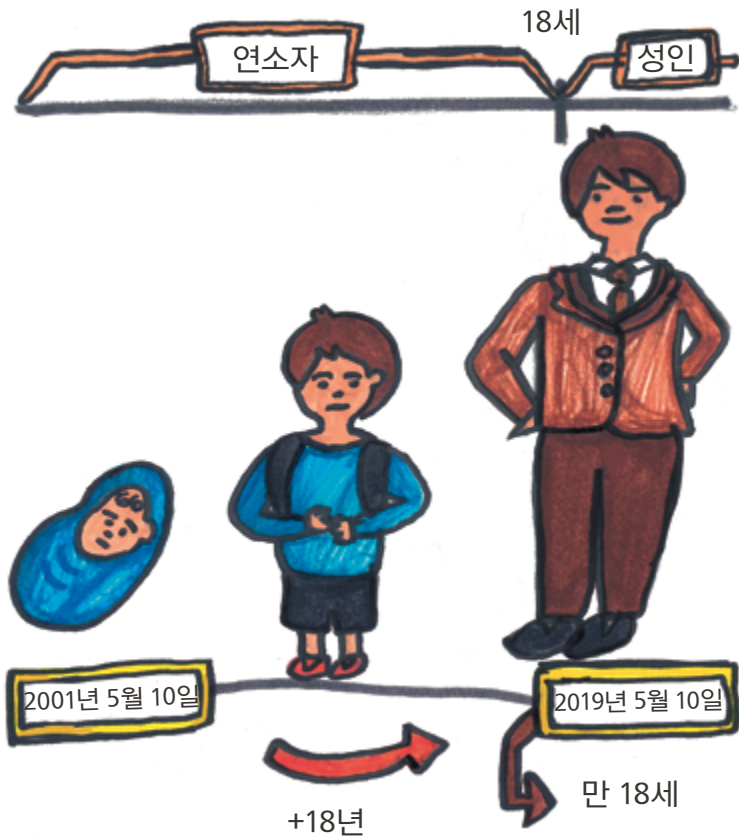


내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는 방법

우리나라에서 보통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1살 더 먹은 것으로 하지만, 만으로 계산하는 경우 월, 일까지 따져서 나이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01년 5월 10일에 태어난 사람이 만 18세가 될 때는 2001년 5월 10일 + 18년 = 2019년 5월 10일입니다.

그러므로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연소자입니다.



내 나이가 만 15세, 16세, 17세면

부모님(또는 후견인)이 일해도 좋다는 동의서,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초본)를 회사에 내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02. 아무 일이나 할 수 없습니다

✓ 일할 수 있는 곳

제조업체, 패스트푸드점,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



도덕상 또는 건강상 안 좋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 일할 수 없는 곳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주류 판매 목적의 소주방 · 호프 · 카페, 비디오방, PC방, 만화방, 사행행위영업 (복권이나 마권처럼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주는 것), 소각업무 등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넘어서 일할 수 없습니다.

⚠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더 일하게 될 때는 일을 더 한 만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할 수 없습니다.

⚠

연소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락을 받으면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사항은 근로자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 1.

저는 16살입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근로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_____

문제 2.

연소자 근로자는 하루에 몇 시간 일할 수 있나요?

_____

문제 3.

저는 현재 17세입니다. 일할 수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_____

① 노래방

② 제조업체

③ 주유소

④ 편의점

문제 4.

연소자 근로자는 밤에도 일할 수 있나요?

_____

문제의 답

문제 1.

답: 부모님(또는 후견인)이 일해도 좋다는 동의서,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설명은 230쪽을 보세요.

문제 2.

답: 7시간

*설명은 234쪽을 보세요.

문제 3.

답: ① 노래방

*설명은 232쪽을 보세요.

문제 4.

답: 안 됩니다.

*설명은 234쪽 보세요.

부록

▼

도움을 주는 기관

유용한 어플리케이션

부록 1.
도움을 주는 기관

일자리를 찾고 싶을 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42쪽

워크투게더(장애인 고용 포털) → 243쪽

회사에서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244,245,246쪽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 → 247쪽

직장을 잃고 생계비(실업급여)가 필요할 때

고용센터 → 248쪽

회사에서 차별받거나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했을 때

고용노동부 → 249쪽

국가인권위원회 → 250쪽

일하다가 다쳐 보상을 받고 싶을 때(산재신청)

근로복지공단 → 251쪽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알고 싶을 때

최저임금위원회 → 252쪽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대해 알고 싶을 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53쪽

일자리를 찾고 싶을 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상담 받고,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소개 받기



· 공단 전화번호

1588-1519

- 일자리 상담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기
- 혼자 전화하기 어렵다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기



· 웹사이트

www.kead.or.kr

또는 검색 사이트에 내가 살고있는 **지역+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검색

-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공단 지사 주소 확인하기
- 공단 지사 직접 방문하여 일자리 상담 받기

워크투게더(장애인고용포털) 사이트에서 최신 채용정보 찾아보기



· 웹사이트

www.worktogether.or.kr

또는 검색 사이트에 **워크투게더** 검색

- [채용정보] 메뉴 클릭

  ⇒ [간편 우리지사 채용정보] 클릭



회사에서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 등 다양한 노동문제 상담 받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1350
- 아래 표에서 내가 상담 받고 싶은 분야 찾고 번호 누르기
- 나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상담 받기
- 혼자 전화하기 어렵다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기

1번	**고용분야** - 실업급여 - 직업훈련 - 고용안전 장려금 · 지원금 - 산전후 · 육아휴직 급여 - 외국인고용허가제 - 구인 · 구직 등 취업지원
2번	**노동관계법 분야** - 임금 · 퇴직금 체불 -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 수당 - 근로시간, 휴일, 휴가 - 산업 안전, 노사관계 - 비정규직 근로
3번	**지방관서 전화번호 및 위치안내** - 지방관서 전화번호 및 위치 정보 (ARS 음성, SMS 문자, FAX 안내)
4번	**나의 민원 처리상태 확인** - 임금체불 진정, 실업급여 등 본인이 신청한 민원의 처리상태 확인 -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5번	**외국어 상담사** - 영어, 중국어 상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 임금체불 신고하기

· 웹사이트

minwon.moel.go.kr

또는 검색 사이트에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검색

- [임금체불 진정] 메뉴 클릭하기

⇒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적기

⇒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 작성하기 ⇒ 혼자 신청하기 어렵다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기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노동위원회에 다시 원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상담 받기

· 웹사이트

www.nlrc.go.kr

또는 검색 사이트에 **노동위원회** 검색

- [민원/참여마당] 메뉴 클릭하기 ⇒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작성하기 ⇒ 혼자 신청하기 어렵다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기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잃게 되고 생계비가 필요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 웹사이트
www.ei.go.kr
또는 검색 사이트에 **고용보험** 검색
- 웹사이트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메뉴 클릭하기
-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하기
- 혼자 신청하기 어렵다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기



회사에서 차별받거나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통해 상담 받고 폭언, 폭행, 성희롱 사건 조사해달라고 신청하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1331
- 내가 차별 받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상담받기
- 혼자 전화하기 어렵다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기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에서 폭언, 폭행, 성희롱 조사 신청하기

· 웹사이트

www.humanrights.go.kr

또는 검색 사이트에 **국가인권위원회** 검색

- [진정 신청] 메뉴 클릭하기
- 내 정보와 차별 당한 상황 자세하기 적기
- 혼자 신청하기 어렵다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기



일하다가 다쳐 보상을 받고 싶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 하기

· 웹사이트

www.kcomwel.or.kr

또는 검색 사이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근로복지공단** 검색

- 지도에서 근로복지공단 주소 확인하기
- 다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산재신청 하기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알고 싶을 때

최저임금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내가 회사에서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비교하기

· 웹사이트

www.minimumwage.go.kr

또는 검색 사이트에 **최저임금위원회** 검색

-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메뉴 클릭
- 내가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많은지 비교하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대해 알고 싶을 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내가 알고 싶은 법 이름(예: 근로기준법)을 검색하여 찾아보기

· 웹사이트

www.moleg.go.kr

또는 검색 사이트에 **법제처** 검색

- [현행법령검색] 검색창에서 [내가 알고 싶은 법] 이름 검색
- 법에서 내가 궁금한 내용 찾아서 보기



부록 2.
유용한 애플리케이션

휴대폰의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나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어플 이름을 검색하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출퇴근 기록 어플
- 일 시작 시간과 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하루에 총 몇 시간 일했는지 알려줍니다.



시급, 월급, 퇴직금 계산기 어플
- 내가 시급과 월급, 퇴직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줍니다.



4대보험 계산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비를 계산하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찾아 볼 수 있고 각종 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서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

이 장에서는 안내서를 개발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01. 이 책은 이런 이유로 필요합니다

장애인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의 취업 및 직장생활에 대한 차별 경험은 다른 장애 유형보다 높고, 평균 취업 기간이 다른 장애 유형보다 짧아서 직장생활에서의 부적응 등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상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에게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쉬운 글, 삽화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2014년에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제공 시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이해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 형태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현장에서 필요한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안내서 제작에 참여하여 발달장애인의 직장 진입과 직장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의 기초지식을 전달하고자 안내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02. 이 책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노동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만들어졌습니다.

〈알기 쉬운 노동법 제작 흐름〉

법률조항 선정	▶ 내용구성	▶ 검증 및 검토	▶ 수정 및 완성
- 실무자회의 - 자문회의	- 문헌조사 - 내용작성 - 쉬운책 발간 지침을 토대로 1차 내용 구성	- 법률검토 - 1차 내용 구성 자료 쉬운 말로 번역	- 2차 쉬운 말로 구성된 내용 법률 검토 - 삽화 제작 (발달장애인)



1단계 발달장애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법률 내용 및 제작 범위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단계 기존 노동 관련 법률 서적과 근로자가 알아야 할 법령 등의 내용수집 등을 통해 작성하였습니다.

3단계 작성된 내용은 서울과 인천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훈련생, 나사렛대학교 재학생이 참여하여 내용을 감수하였습니다.

4단계 쉬운 글 형태로 수정된 내용에 관하여 법률 및 발달장애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5단계 쉬운 글 내용에 대하여 일러스트 전문가와 발달장애인이 팀워크로 삽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03. 이 책은 이런 순서로 되어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첫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나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해 직업정보를 검색하고, 직업훈련을 받고 구직상담을 합니다.

본인이 원하던 직장에 입사하기 위해 이력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통해 첫 직장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장인으로 알아야 할 법률은 막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찾아보게 됩니다.

특히 일하면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임금, 휴가 등 직장에서 쉽게 접하는 용어도 발달장애인에게는 어려운 개념 일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노동법은 5부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장 일을 알아보고 있어요.

2장 일을 시작했어요.

3장 일을 다니고 있어요.

4장 일을 그만두었어요.

5장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는데 일을 할 수 있나요?

공단에 취업한 발달장애인 중 만15세부터 만17세까지 취업한 연소근로자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연소근로자를 위해 일반 근로자와 다른 점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04. 함께 만든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알기 쉬운 노동법은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통해 만들었습니다.

서울과 인천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훈련생, 나사렛대학교 재학생들이 어려운 내용에 대해 의견을 주었고, 이를 쉽게 바꿔가면서 제작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노동법을 만드는 데 참여한 소감은?

평소에 제가 잘 몰랐던 내용들(회사에 다니면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을 배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서울발달훈련센터 훈련생 박민정

솔직히 우리 현실을 생각하자면, 우리는 노동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서울발달훈련센터 훈련생 정은총

선생님이 간식을 주셨을 때 감사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다시 노동법을 계속 쭉쭉 이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산재보험을 배울 때 재미있었습니다.

서울발달훈련센터 훈련생 김두원

이번에 노동법에 관해 공부한 것이 나중에 취업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발달훈련센터 훈련생 김영재

노동법에 대해 친구들과 배웠고 알고 익히면서 공부를 했다.

서울발달훈련센터 훈련생 김홍일

알기 쉬운 노동법 참여한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위해 쉬운 노동법을 알 수 있어서 참 재미있었다.

서울발달훈련센터 훈련생 심은혜

배울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른 친구들도 배우면 취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서울발달훈련센터 훈련생 이시원

노동법을 배우면 우리 같은 장애인들은 취업도 근무도 쉬워지겠죠. 우리가 만든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발달훈련센터 훈련생 유석훈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노동법

초판 1쇄 발행 2018년 3월 23일

초판 2쇄 발행 2018년 9월 17일

초판 3쇄 발행 2018년 11월 16일

초판 4쇄 발행 2019년 3월 19일

책 펴낸 곳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책 펴낸 곳 연락처 (136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전화 (031)728-7000 / 전자팩스 (050)3470-0906
/ 전자우편 wona@kead.or.kr

홈 페 이 지 http://www.kead.or.kr

I S B N 978-89-5813-217-2

책 편집 및 디자인 피치마켓 / 전화 (02)3789-0419

※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있습니다.
제 3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정보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